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

삼성KODEX 철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]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 :

증권[주식]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5.01 - 2012.12.31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KTB투자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29	제12조 (투자신탁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년으로 한 한다. 다만, 신만, 최초 투자신탁 계약 해지 시 회계기간은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회계기간 초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 일까지로 한다. 하며 신탁 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년으로 한 한다. 다만, 신만, 최초 투자신탁 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 일까지로 한다.	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 일까지 2. 제 1 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의 회계기간 : 최초회계기간 의일로부터 매 1년간

		3. 2012년 4월 30일 경과 후의 최초회계기간 :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
		4. 제 3 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
제38조 (투자신탁보수)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의 투자신탁기준일(단, 회 탁분배금 계기간 종료일 지급기준일을 제외하며, (단, 회계기간 말일 지급기준일)의 익영업일을 제외 기준으로 산출 하며, 이하 하되, 구체적 “분배금인 보수 계산기 지급기준”은 다음 각 일 ”이라호에서 정하는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정한다. 1. 생략 2. 제1호의 보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정한다. 3. 생략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의 투자신탁기준일(단, 회 탁분배금 계기간 종료일 지급기준일을 제외하며, (단, 회계기간 말일 지급기준일)의 익영업일을 제외 기준으로 산출 하며, 이하 하되, 구체적 “분배금인 보수 계산기 지급기준”은 다음 각 일 ”이라호에서 정하는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정한다. 1. 생략 2. 제1호의 보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정한다. 3. 생략

		료일 익일 부터 최초 로 도래하 는 분배금 지급기준일 까지 3. 생략	
2012.06.29	제39조 (투자신 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 2012.06.29	② 1.~4. 생 략 5. 수익자 총회 관계 비용 6.~11 생 략 주 가 ② 1.~4. 생 략 5. 전체 수익 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 련비용 6.~11 생 략 12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 ① 생 략 1. 지급기 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막일 및 회 계기간 계기간 일의 업일 1. 지급기 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, 다만 영업회계기간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	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 자	변경사 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 호
2012.0 6. 29	말소	김남 기	- 고려대학 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 용 신탁회계팀 - 채권 2팀 - 채권 1팀 - ETF 운용팀	2109001159
2012.0 6. 29	신규	김남 의	- 한국과학기 술원 산업공학학 사 - 삼성자산운 용 ETF 운용 1팀	2110000109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・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	계약 기간	계약 방법	감사 보수	회계 감사 인명		계약 기간	계약 방법	감사 보수	
안진회계 법인	1 년	165 만원	서면 계약	-	-	-	-	-	-

\*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・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